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18. 11. 15, 청탁금지해석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 받는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 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 1 기본 방향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 부당지원 여부 판단기준 >

- 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지원(제3호)인지 여부
- ②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지원(제6호)하는 것인지 여부
- ③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제8호)인지 여부

## 2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

- √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등을 받는 기관 등을 의미
- √ 산하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거나 정부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여 주무부처 등의 감독을 받는 기관 등을 의미
- √ 피감·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원칙)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
    -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
      - ▶ (국제행사 유치)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수영·탁구·조정·태권도·바둑 등 선수권대회, 세계잼버리대회, 세계마술올림픽대회, 세계비엔날레 등
      - ▶ (국책사업 수주) 건설·해양플랜트 등 국책사업 수주 등
    -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의 필요성</li> </ul>	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국익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 초청이 있을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자의 적합성</li> </ul>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시기의 적시성</li> </ul>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예외적으로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적시성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경비의 적정성</li> </ul>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국익 등 목적의 해외출장 지원이 인정되려면 **법령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국익 등의 목적·출장 필요성 등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예산반영은 있으나 법령·기준의 근거가 없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2018.5.4. 제정)

제4조(외부 경비를 지원 받는 국외활동의 금지 등)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위하여 외부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 아니 된다. 다만,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등으로부터 국외활동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국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
  -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

[참고]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한 해외출장(부당지원) 사례

- 피감기관인 ○○재단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을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
- ○○공기업이 중앙부처인 ○○부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이 동행함에도 감독기관인 ○○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하여 출장 지원
- ○○시는 시의회 의원 10여명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 기술 전시회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 지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3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예정인)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기관·단체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 √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 필요

□ (원칙)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 확보

(예시) ○○공사 공무국외출장 시행세칙

제12조(출장의 제한)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예외적 허용)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허용

(사례) ○○부 고시에 근거하여 ○○공사 소속 직원들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를 위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부 고시)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 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
  -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

[참고] :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부당지원) 사례

- ○○부는 업무협약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음
- ○○부는 장관 표창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목적의 해외출장 비용을 감독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
-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법령·기준의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 법령·기준의 근거 없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계약사항에 기업이 공직자의 국제회의 참석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해외출장 비용 지원

## 4 후속 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에 피감·산하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거부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 등 근거 마련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의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주요 내용 >

-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
-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 등
-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사·감독(상급)기관 감사부서 통보 의무화
-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 금지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개최('18.10월)
- 부당지원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공공기관에 안내(~'18.11월)
- 부당지원 사례 등을 유형화하여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게재